



보도시점 2024. 10. 24.(목) 11:00
10. 25.(금) 조간

배포 2024. 10. 24.(목) 09:00

해외농업·산림자원 반입 활성화, 법적 근거 마련

-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, 10월 25일 시행
- 해외농업·산림자원 반입 명령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
- 국제농업·산림개발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지난해 10월 24일 공포한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(이하 해외농업산림법)」 일부 개정안이 10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.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,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·시행된다.

농식품부는 비상 시 해외농업·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반입 실효성을 높이고, 농림분야 국제협력(ODA) 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.

해외농업산림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 마련

그간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비상 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른 의무는 있으나,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.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를 보완하여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,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하였다.

② 농림분야 국제협력(ODA)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

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, 농업·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.

③ 농업기계·농업자재 등 농업·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

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·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“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국제협력(ODA)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.”라며, “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, 국제협력(ODA)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용호	(044-201-2031)
		담당자	사무관	장진영	(044-201-2040)
			사무관	서은희	(044-201-2042)

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1. 비상시 해외농업·산림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 제고		
손실 보상	-	(신설)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 규정 마련 - 반입명령 요건·절차, 손실보상 기준·절차 등 규정
	-	(신설)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 신설
관계 기관 협조 요청	협조 요청 대상기관: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	(추가) 공공기관, 협회 및 관련 기관
	관계기관의 협조 대상 업무: 농업·산림 분야 국제협력(ODA) 종합계획 수립, 조사, 인력의 육성 및 관리,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	(추가) 농림분야 국제협력(ODA) 사업 계획·시책 수립, 비상시 해외농림자원 국내 반입
2. 국제농림협력(농림 ODA) 사업의 추진체계 정비		
종합 계획	-	(신설) 농림분야 국제협력(ODA) 사업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 신설 - 5년 단위 수립, 수립·변경시 공고 방법 등 규정
지원 기관	-	(신설) 전문성 있는 기관을 농림분야 국제협력(ODA) 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 신설 - 농림분야 국제협력(ODA) 사업 지원기관 요건·절차 등 규정
3.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		
연관 산업 진출 지원	-	(신설)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관 산업(농기계, 농자재 등 농업·산림 투입재 산업)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규정 신설
기타	-	(신설) 평상시 해외농업·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 신설 * 해당 해외농업·산림자원의 국내 지급 상황 등 고려 필요